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폐업한 공중위생업소에 대하여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영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하고자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4 규정에 의거 직권말소 예정 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10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 제 목 :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 공고기간 : 2025. 1. 10. ~ 2025. 2. 7.
- 공고대상 및 내용

업종	신고번호	업소명	영업자	소재지	직권말소 사유
일반미용업	2014-00004	김희정	김*심	증가로 16 (연희동)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폐업신고
	100	준오미용실	엄*란	이화여대길 81 (대현동, 71)	

- 처분근거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제4항
- 처분내용 : 직권말소
- 유의사항
 - 위 공고기간까지 직권말소 처분에 대하여 별도의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상기 영업신고사항이 직권말소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처 : 서대문구보건소 보건위생과 공중안전팀(☎02-330-8707)